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59

제출년월일 : 1995. 11.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21세기를 향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여성발전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목 적 :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 (안 제1조)

나. 기 능 (안 제2조)
- ○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 ○ 여성관련 각종 정보자료 수집·분석
- ○ 여성의 능력개발에 관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 기타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자문등

다. 구 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안 제3조)

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수집·정리 및 연구등을 위한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안 제4조)

마. 회 의 : 매월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때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 청취
(안 제 7조)

바. 여성회관 서무계장이 간사가 되어 사무를 처리토록 함
(안 제8조)

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안 제9조)

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 10조)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2. 여성관련 각종 정보자료 수집·분석
3. 여성의 능력개발에 관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4. 기타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자문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전광역시여성회관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여성관련학 전공 대학교수
2. 각급 여성단체에서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상당기간 활동한 실적이 있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전문연구원)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정리 및 연구등을 위하여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연구원은 대전광역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임용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등 관련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여성회관 서무계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大田廣域市女性發展硏究委員會設置條例案

審 査 報 告 書

1995年 12月 日

文 敎 社 會 委 員 會

大田廣域市女性發展硏究委員會設置條例案

審　　査　　報　　告

1995. 12. 18.
文敎社會 委員會

Ⅰ. 審 査 經 過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5年 11月 16日 大田廣域市長

나. 回 附 日 字 : 1995年 11月 20日

다. 上 程 日 字 : 第48回 大田廣域市議會 (定期會)
第 6次 文敎社會 委員會 ('95. 12. 18)
上程, 審査, 修正議決

Ⅱ. 提案說明 要旨 (提案說明 : 家庭福祉局長)

1. 提 案 理 由

○. 21세기를 향한 女性의 地位를 向上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女性들의 참여기회를 擴大하여, 女性發展에 관한 調査硏究를 위한 「大田廣域市女性發展硏究委員會」를 設置 運營코자 함.

2. 主 要 骨 子

가. 目　的 : 女性의 地位向上과 能力開發 社會參與擴大와 女性政策에 대한 諮問 (안 제1조)

나. 機　能 (안 제2조)

ㅇ. 女性의 權益保護와 복지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ㅇ. 女性관련 각종 情報資料 수집·분석
ㅇ. 女性의 能力開發에 관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ㅇ. 기타 女性會館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자문등

다. 構　成 : 委員長과 副委員長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互選하고 副委員長은 委員長이 指名(안 제3조)

라. 委員會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수집·정리 및 연구등을 위한 專門硏究員을 둠. (안 제4조)

마. 會　議 : 매월 1회 개최하는 定期會와 委員長이 필요시 臨時會를 소집하고, 所管事項에 대하여 필요할때 관계공무원 및 專門家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 청취(안 제7조)

바. 女性會館 서무계장이 幹事가 되어 사무를 처리토록 함.
(안 제8조)

사. 공무원이 아닌 委員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시 수당과 여비를 지급 (안 제9조)

아.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Ⅲ.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金鎭鎬)

□ 이 條例制定案은 女性의 지위향상과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機會擴大와 여성정책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大田廣域市女性發展委員會를 설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내용으로써 이에 대한 檢討意見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목적 및 기능관련 (안 제1조 및 제2조 관련)

○. 女性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등을 도모하기 위한 당 위원회의 설치는 국가정책에도 부합되는 사업목적과 기능을 가지는 위원회로 중앙정부에 설치된 "韓國女性開發硏究院"의 기능을 지방정부에서 실천하려는 것으로 설치 운영시 大田市 女性들의 능력개발 및 지위향상에 기여하리라 사료됨.

2.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5조 내지 제10조)

○. 本 委員會에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각 1인과 10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고 大田廣域市 女性會館長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會議는 매월 1회의 定期會와 수시로 개최하는 臨時會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女性問題에 대한 全擔硏究委員會議로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大田廣域市에 설치된 67개의 委員會中 21개의 委員會가 '95年度에 한번도 운영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條例에 의한 매월 1회의 定期會議를 형식적으로 치름으로써 豫算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이 강구 되어야할 것으로 思料됨.

3. 人力關聯 法的事項 (안 제4조 관련)

○ 委員會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 정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專門硏究員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地方自治團體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 제1항 제5호에는 專任專門職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專任專門職 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에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두도록 되어있어

本 委員會에 專門職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다른 부서의 정원이 결원상태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바 다른 부서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 별도의 정원 충원 대책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以上에서 檢討한 바와 같이 大田廣域市 女性發展硏究委員會設置條例案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지위향상을 위한 大田廣域市의 여성문제에 관한 專門硏究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는 시대조류에 부응하고 국가정책에도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專門委員을 둠으로써 타 부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정원의 증원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他 市道의 경우 女性政策開發과 관련된 部署를 市長

직속으로 하는 事例등을 참고하여 本 市의 女性發展硏究委員會의 格上을 높여야 할 것으로 思料됨.

Ⅳ. 討 論 要 旨 : 없 음

Ⅴ. 質疑및 答辯要旨 : 省 略

Ⅵ. 審 査 結 果 : 修正案 議決

(修正된 부분 修正案대로 그외 부분 原案대로 議決)

Ⅶ. 修正案 要旨

1. 修 正 理 由 : 別 添
2. 修正 主票骨子 : 別 添

Ⅷ.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출년월일 : 1995. 12. 18.
제 출 자 : 문교사회 위원회

1. 수 정 이 유

대전광역시 여성발전연구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려는 것으로 위원장을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시정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고 보다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케 하기 위하여 제출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변경코자 함.

2. 수 정 골 자

제2조 (기능) 제4항을 “여성기관 단체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로 변경하고 제5항에 “여성정책방향의 제시와 검증에 관한 연구”를 신설

제3조 (구성) 제2항중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를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로 변경

제4조 (전문연구원) 제1항중 “정리 및 연구등을 위하여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를 “정리와 연구를 위하여 전문연구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로 변경

제8조 (간사) 제1항중 “여성회관 서무계장이 된다”를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변경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전광역시 여성발전연구위원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기능)중 제4호 “기타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자문등”을 “여성기관단체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로 하고 제5호에 “여성정책방향의 제시와 검증에 관한 연구”를 신설한다.

안 제3조 (구성) 제2항중 “위원중에서 호선하고”를 “행정부시장으로 하고”로 하고 제3항 제1호를 “사회복지 또는 여성관련학 전공대학교수”를 “사회복지학 또는 여성학 전공자와 기타 학문분야에서 여성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가”로 하고 제2호를 “각급 여성단체에서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상당기간 활동한 실적이 있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자”를 “각급 여성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안 제4조(전문연구원) 제1항중 “위원회에 위원회의”와 “정리 및 연구등을 위하여 전문 연구원을” 각각 “위원회에는 위원회”와 “정리와 연구를 위하여 전문연구원 약간명을” 로 하고 제2항중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를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소정의 연구경력을 소지한 자로 시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안 제8조(간사) 제1항중 “여성회관 서무계장이 된다”를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제2항중 “위원회의 사무를” “위원회의 제반사무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출 안	수 정 안
제2조 (기능) ---------- 1. ---------- 2. ---------- 3. ---------- 4. 기타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자문등	제2조 (기능) ---------- 1. ---------- 2. ---------- 3. ---------- 4. 여성기관단체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5. 여성정책방향의 제시와 검증에 관한 연구 (신설)
제3조 (구성) ① ----------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 ③ ---------- 1. 사회복지 또는 여성관련학 전공 대학교수 2. 각급 여성단체에서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상당기간 활동한 실적이 있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자 3. 기타 --------	제3조 (구성) ① 제출안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 ③ 제출안 1. 사회복지학 또는 여성학 전공자와 기타 학문분야에서 여성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가 2. 각급 여성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자 3. 제출안
제4조 (전문연구원)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 정리 및 연구등을 위하여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전문연구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 정리와 연구등 위하여 전문연구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출 안	수 정 안
② 전문연구원은 ------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② ----------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소정의 연구경력을 소지한 자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여성회관 서무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간사) ① -------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처리한다.